

무배당 교보변액연금전환특약

약 관

무배당 교보변액연금전환특약은 계약해당일 당시 주계약 피보험자 또는 주계약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또는 부모의 나이가 50세 이상인 유효한 계약에 대하여 계약자의 별도신청과 회사의 승낙에 따라 부가함으로써, 보장 대신 주계약과 계약자가 선택한 특약의 해약환급금 또는 주계약 피보험자 사망시 사망보험금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특약입니다. 계약해당일 당시 무배당 교보변액연금전환특약의 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무배당 교보변액연금전환특약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과 관련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에서 별도로 정한 제도를 적용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에 부가됩니다.(이하 이 특약의 적용을 받는 주된 보험 계약 또는 특약을 “전환 전 계약”이라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피보험자 : 이 특약에서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별표 1) “연금 지급 기준표” 참조]을 말합니다.

나. 계약해당일 : 계약해당일은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 하며, 매년 계약해당일은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씩 지난 매년의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다. 연금지급개시일 :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개시나이의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3. 보험료납입 관련 용어

- 가. 기본보험료 : 전환 전 계약의 전환일시금을 말합니다. 다만, 전환일시금이란 전환 전 계약의 지급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에 납입하는 것으로 합니다.
- 나. 월공제액 : 해당월의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및 실적배당 종신연금 보증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며, 매월 계약해당일에 계약자적립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최저사망보험금이 “0”이 되면, 이후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 다. 이미 납입한 보험료 : 보험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기본보험료를 말합니다.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이 있었을 경우에는 기본보험료에서 인출금액의 합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중도에 계약자적립액을 인출할 경우의 최저사망보험금 및 연금지급기준금액에서 정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제24조(계약자적립액의 인출) 제4항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를 말합니다.

4. 변액보험 관련 용어

- 가. 변액보험 : 회사에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로 자금을 조성하여 특별계정으로 운영하고, 그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투자이익을 배분함으로써 보험기간 중에 보험금액 등이 변동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 나. 일반계정 : 보험업법(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108조(특별계정의 설정·운용)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을 제외한 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회계처리하기 위한 계정을 말하며, 회사는 제‘다’목의 특별계정과

구분하여 재산을 관리하고 회계처리합니다.

[설명]

- 특별계정 이외에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회계 처리하기 위한 계정을 말합니다.
- 생명보험상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관리계정으로서 퇴직보험, 연금저축, 변액보험처럼 관련 법령으로 특별계정을 설치하여 운용하도록 한 상품 이외의 상품에 적용되는 계정입니다.

다. 특별계정 : 법 제108조(특별계정의 설정·운용) 제1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계약자적립액에 상당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타 재산과 구별하여 이용하기 위한 계정을 말합니다.

[설명]

- 계약자적립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타 재산과 구별하여 운용하기 위한 계정을 말합니다.
- 보험상품의 도입목적, 상품운용방법 등이 일반상품과 크게 상이하여 보험회사로 하여금 다른 보험상품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 및 운용을 할 것을 보험관련 법규에서 지정함으로써 계정상호간 보험계약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주요 특별계정 상품으로는 퇴직보험, 연금저축, 변액보험 등이 있습니다.

라. 펀드 : 보험계약자가 선택한 특별계정 자산을 말합니다.

마. 특별계정 운용보수 : 운영보수,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및 사무관리보수를 합한 보수를 말합니다.

바. 운영보수 :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을 위

해 회사가 수취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사. 투자일임보수 :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투자일임을 위해 자산운용사 등 투자일임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아. 수탁보수 :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보관 및 관리, 자산운용 지시의 이행, 운용업무의 위규여부 등을 감시하기 위하여 신탁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자. 사무관리보수 :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회계업무 및 기준가격 산정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일반사무관리회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5.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평균공시이율 :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하며, 평균공시이율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 해약환급금 :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다. 계약자적립액 :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개별 보험계약자별로 배분된 금액 등을 말하며, 특별계정의 평가 등에 따라 매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설명]

변액보험은 각 펀드별로 매일의 펀드 운용실적을 반영하여 기준가격을 산출함으로써 기준가격이 매일 변동하기 때문에, 펀드에 투입되는 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도 그 처리 기준일의 기준가격에 따라 매입 좌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따라서 수익률이 다를 수 있습니다.

라. 최저사망보험금 :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는 관계없이 보장

하는 최저 한도의 사망보험금으로서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의 최저사망보험금은 사망시점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하며,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최저사망보험금은 사망시점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서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발생한 실적배당 종신연금지급액의 합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최저사망보험금이 0보다 적은 경우 0으로 합니다.

마.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 특별계정에 따라 운용된 투자 실적과 관계 없이 최저사망보험금의 지급을 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바. 실적배당 종신연금 보증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 특별계정의 운용 실적과는 관계없이 실적배당 종신연금을 보증 지급하는 것으로서, 실적배당 종신연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 기본형 : 연금지급기준금액에 실적배당 종신연금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2) 10년 집중지급형 : 연금지급개시시점부터 집중지급기간(10년)까지는 연금지급기준금액에 실적배당 종신연금지급률의 2배를 곱하여 산출하며 집중지급기간(10년)이 지난 후에는 연금지급기준금액에 실적배당 종신연금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사. 연금지급기준금액 : 연금지급개시나이의 계약해당일에 계약자적립액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큰 금액을 말하며, 이후 연금지급기준금액 재설정일마다 계약자적립액과 직전 연금지급기준금액(다만, 직전 연금지급기준금액 재설정일 이후 계약자적립액을 인출한 경우에는 변경된 연금지급기준금액) 중 큰 금액을 연금지급기준금액으로 재설정

합니다. 다만,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계약자적립액을 인출할 경우의 실적배당 종신연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연금지급기준금액은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 인출 이후의 연금지급기준금액

= 인출 전 연금지급기준금액

$$\times \frac{\text{인출 전 계약자적립액} - \text{인출금액}}{\text{인출 전 계약자적립액}}$$

(주) 인출 전 연금지급기준금액은 해당 인출 전에 인출이 발생한 경우 위의 방법에 따라 계산된 연금지급기준금액을 말합니다.

아. 연금지급기준금액 재설정일 : 연금지급개시나이의 계약해당일부터 매 3년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자. 실적배당 종신연금지급률 :

(1) 기본형

연금지급개시나이	피보험자가 남자인 경우	피보험자가 여자인 경우
55 ~ 59세	3.80%	3.60%
60 ~ 64세	4.05%	3.80%
65 ~ 69세	4.50%	4.25%
70 ~ 74세	4.70%	4.50%
75 ~ 79세	4.95%	4.95%
80세	5.40%	5.40%

(2) 10년 집중지급형

연금지급개시나이	피보험자가 남자인 경우	피보험자가 여자인 경우
55 ~ 59세	2.70%	2.65%
60 ~ 64세	2.80%	2.75%
65 ~ 69세	3.00%	2.95%

연금지급개시나이	피보험자가 남자인 경우	피보험자가 여자인 경우
70 ~ 74세	3.05%	3.00%
75 ~ 79세	3.10%	3.10%
80세	3.20%	3.20%

차. 실적배당 종신연금 보증비용 :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실적배당 종신연금의 지급을 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실적배당 종신연금 [(별표 1) “연금지급 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과 최저사망보험금 중 큰 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별표 2)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과 같이 계산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최저사망보험금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적립액을 인출한 경우 제24조(계약자적립액의 인출) 제4항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제5조 (보험금 등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사망시 지급액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등)
3.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등본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5.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 또는 계약자가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사망시 지급액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6조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 ① 회사는 제5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② 회사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실적배당 종신연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 드리며,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 2)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과 같습니다.

제7조 (보험계약의 변동사항 통지)

- ① 회사는 계약일부터 분기별로 계약의 변동사항(연금지급기준금액의 변동이 있으면 이에 대한 사항을 포함)을 보험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혹은 보험기간 중 전자우편을 통하여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취) 또는 인터넷 등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경우 금융감독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추가적인 사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제3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8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 ① 이 특약은 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체결 후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전환 전 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이하 보험계약자는 “계약자”라 합니다)
- ② 제1항의 경우 계약해당일 당시 이 특약의 사업방법서, 약관, 산출방법서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 ③ 제9조(피보험자의 범위)에서 정하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④ 회사가 기본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 + 1%」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9조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전환 전 계약에서 소멸에 준하는 사유로 전환할 경우에는 전환 전 계약의 보험수익자 또는 전환 전 계약의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이하 “배우자”라 합니다) 또는 부모(이하 “부모”라 합니다)로 하고, 그 외 기타 사유로 전환할 경우에는 전환 전 계약의 피보험자 또는 전환 전 계약의 피보험자의 배우자 또는 전환 전 계약의 피보험자의 부모로 합니다.

제10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

-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표기하여 드립니다.
 1. 연금지급개시나이
 2. 계약자
 3. 기타 계약의 내용
-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계약자는 제1항 제1호의 연금지급개시나이를 연금지급개시전에 이 특약의 사업방법서에 정한 기준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연금지급개시나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④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지 않을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

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 ⑤ 회사는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4관 보험료의 납입

제11조 (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 ① 이 특약의 기본보험료는 전환 전 계약의 지급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에 납입하는 것으로 하며, 계약해당일부터 보장개시일이 시작됩니다.
- ② 이 특약의 연금지급개시일은 전환을 신청할 때 연금지급개시나이(피보험자 나이 55세부터 80세) 중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개시나이로 합니다.

제12조 (납입된 보험료의 처리)

- ① 계약자가 납입하는 기본보험료의 처리는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이 특약의 특별계정투입보험료(기본보험료에서 회사 소정의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 이하 “특별계정투입보험료”라 합니다)에 해당하는 이체금액을 제16조(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 제6항에 따라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및 「이체금액」은 다음과 같

습니다.

계약해당일부터 3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로 하며, 이 경우 이체금액은 특별계정투입보험료를 계약해당일부터 3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까지 「평균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으로 합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제8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4항을 적용합니다.

제5관 특별계정에 관한 사항

제13조 (계약자적립액의 계산)

- ①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계산은 계약자적립액에서 월계약해당일에 월공제액을 차감한 금액과 특별계정투입보험료에 해당하는 이체금액에 대하여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을 반영하여 이 특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회사는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에서 매일 특별계정 운용보수를 차감합니다.

제14조 (펀드의 운용 및 평가)

- ① 투자목적 및 대상에 따라 구분된 변액보험의 펀드는 특별계정별로 일반보험의 자산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용되며, 자산 운용실적이 계약자적립액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매일 평가합니다.
- ② 제1항의 특별계정에서 관리되는 자산의 운용실적에 따른 이익 및 손실은 다른 계정의 자산운용에 따른 이익 및 손실에 관계

없이 이 계약으로 귀속됩니다.

- ③ 계약자는 특별계정의 자산운용방법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여를 할 수 없습니다.
- ④ 회사는 이 특약의 운용자산을 회사가 운영하는 다른 변액보험의 유사한 성격의 운용자산별로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펀드 통합사유, 통합일자, 기타 펀드통합 관련 사항을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등록)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동법 제2조(정의) 제1호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에 공고하거나 계약자에게 개별 통지하며, 펀드를 통합한 날 이후 6개월이 지나는 날까지 각 펀드의 결산서류를 회사 본점에 비치합니다.

제15조 (펀드의 유형)

펀드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K-커버드형

주식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이나 집합투자증권(ETF포함) 등에 펀드 순자산(NAV)의 100%이하를 투자하고, 나머지는 채권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또는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합니다. 다만, 주식관련 파생상품 투자(Call옵션 매도, Put옵션 매수 또는 이와 유사한 수익구조를 만들기 위한 주식관련 선물거래 등)를 통해 주가상승 국면에서 수익을 일정부분 제한하는 대신, 주가하락 국면에서 손실을 일정부분 제한하고, 주식 횡보 국면에서 추가수익 확보를 통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달성을 추구하는 펀드로서, 2016년 11월 14일에 설정된 무배당 교보건강플러스변액종신보험의 K-커버드형 펀드입니다.

투자자산	주가지수 선물 및 장내외 풋옵션
------	-------------------

만기	2년 이하
행사가 (%)	100%에서 6개월 시장 변동성(%) 내외를 차감한 가격
리밸런싱	잔존만기가 최초 만기의 50% 이하가 되는 시점

투자자산	장내외 콜옵션
만기	1년 이내
행사가 (%)	100%에서 1개월 시장 변동성(%) X 0.33 내외를 더한 가격
리밸런싱	만기시점 또는 그 이전

(2) 글로벌자산배분형

국내외 주식, 채권, 부동산, 실물자산 등 다양한 자산 및 이와 관련된 펀드(ETF 포함)나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의 100% 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하는 펀드로서 2016년 4월 1일에 설정된 무배당 교보 하이브리드변액종신보험의 글로벌멀티에셋형 펀드입니다.

(3) AI글로벌자산배분형

국내외 주식, 채권, 부동산, 실물자산 등 다양한 자산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과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의 100%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위의 주식을 투자함에 있어 AI(인공지능) 알고리즘과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투자하는 펀드로서 2020년 7월 20일에 설정된 무배당 교보플러스하이브리드변액종신보험의 AI글로벌자산배분형 펀드입니다.

(4) K-Selection주식형

주식(코스닥, 공모주 포함) 및 주식관련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 60% 이상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채권(전

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 주식관련사채, 사모사채 및 후순위채권 포함) 및 채권관련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그리고 주식관련파생상품 및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하는 펀드로서 2015년 7월 1일에 설정된 나를 담은 가족사랑 무배당 교보 New 변액유니버설통합종신보험의 K-Selection주식형 펀드입니다.

(5) 글로벌배당주식형

국내외 주식(공모주 포함), 이와 관련된 파생상품 및 집합투자증권(ETF 포함) 등에 순자산의 60% 이상 투자하고, 나머지는 채권 또는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위의 주식을 투자함에 있어 선진국 고배당 종목 등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로서 2017년 1월 1일에 설정된 무배당 교보건강플러스변액종신보험의 글로벌배당주식형 펀드입니다.

(6) 이머징주식형

국내외 주식(공모주 포함), 이와 관련된 파생상품 및 집합투자증권(ETF 포함) 등에 순자산의 60% 이상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채권 또는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위의 주식을 투자함에 있어 글로벌 이머징 국가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로서 2017년 1월 1일에 설정된 무배당 교보건강플러스변액종신보험의 이머징주식형 펀드입니다.

(7) 글로벌주식형

국내외 주식(공모주 포함) 및 주식관련파생상품, 국외 주식에 투자하는 수익증권(ETF 포함) 등에 순자산의 60% 이상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채권 또는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하는 펀드로서 2014년 5월 1일에 설정된 멀티플랜 무배당 교보변액유니버설통합종신보험의 글로벌주식형 펀드입니다.

(8) 일반주식형

한국거래소 상장종목(공모주 포함) 및 주식관련파생상품 등에 순자산의 60% 이상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채권 또는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하는 펀드로서 2011년 5월 2일에 설정된 무배당 교보변액유니버설종신보험(가족형)Ⅱ의 일반주식형 펀드입니다.

(9) 인덱스주식형

한국거래소 상장종목 및 주식관련파생상품 등에 순자산의 60% 이상을 투자하여 KOSPI200지수 등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지수의 수익률을 추종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채권 또는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하는 펀드로서 2011년 5월 2일에 설정된 무배당 교보변액유니버설종신보험(가족형)Ⅱ의 인덱스주식형 펀드입니다.

(10) 가치주식형

한국거래소 상장종목(공모주 포함)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의 60% 이상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채권 또는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하는 펀드로서 2013년 7월 1일에 설정된 더 든든한 무배당 교보변액유니버설통합종신보험의 가치주식형 펀드입니다. 위의 주식에 투자함에 있어 내재가치대비 저평가 종목 및 고배당 종목 등에 주로 투자합니다.

(11) 성장주식형

한국거래소 상장종목(공모주 포함)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의 60% 이상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채권 또는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하는 펀드로서 2013년 7월 1일에 설정된 더 든든한 무배당 교보변액유니버설통합종신보험의 성장주식형 펀드입니다. 위의 주식에 투자함에 있어 성장성이 기대되는 종목 및 업종대표 우량 종목 등에 주로 투자합니다.

(12) 글로벌원자재형

국내외 원자재 관련 주식, 이와 관련된 파생상품 및 집합투자증권(ETF 포함) 등에 순자산의 60% 이상 투자하고 나머지는 채권 또는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하는 펀드로서 2020년 7월 20일에 설정된 무배당 교보플러스하이브리드변액종신보험의 글로벌원자재형 펀드입니다.

(13) 글로벌ESG주식형

국내외 주식(공모주 포함), 이와 관련된 파생상품채권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 등에 순자산의 60%이상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채권 또는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위의 주식을 투자함에 있어 ESG관점을 반영하여 투자하는 펀드로서 2020년 7월 20일에 설정된 무배당 교보플러스하이브리드변액종신보험의 글로벌ESG주식형 펀드입니다.

* Environmental (환경), Social (사회), Governance (지배구조)

(14) 글로벌자산배분형30

국내외 주식, 부동산, 실물자산 등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30% 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국내외 채권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펀드로서 2020년 7월 20일에 설정된 무배당 교보플러스하이브리드변액종신보험의 글로벌자산배분형30 펀드입니다.

(15) 글로벌자산배분형50

국내외 주식, 부동산, 실물자산 등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 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의 50% 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국내외 채권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 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펀드로서 2021년 8월 1일에 설정된 무배당 교보New플러스하이브리드변액종신보험의 글로벌자산배분형50 펀드입니다.

(16) 국내신성장ETF주식형

국내외 주식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기구(ETF 포함)나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의 60%이상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위의 주식을 투자함에 있어 국내 신성장 관련 종목에 주로 투자 펀드로서 2021년 8월 1일에 설정된 무배당 교보New플러스하이브리드변액종신보험의 국내신성장ETF주식형 펀드입니다.

(17) 글로벌신성장주식형

국내외 주식 및 이와 관련된 펀드(ETF 포함)나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의 60%이상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위의 주식을 투자함에 있어 글로벌 신성장 종목 등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로서 2021년 8월 1일에 설정된 무배당 교보New플러스하이브리드변액종신보험의 글로벌신성장주식형 펀드입니다.

(18) 미국주식형

국내외 주식 및 이와 관련된 펀드(ETF 포함)나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의 60% 이상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위의 주식을 투자함에 있어 미국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로서 2021년 8월 1일에 설정된 무배당 교보New플러스하이브리드변액종신보험의 미국주식형 펀드입니다.

(19) 중국주식형

국내외 주식 및 이와 관련된 펀드(ETF 포함)나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의 60% 이상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위의 주식을 투자함에 있어 중국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로서 2021년 8월 1일에 설정된 무배당 교보New플러스하이브리드변액종신보험의 중국주식형 펀드입니다.

드립니다.

(20) 글로벌금리연동채권형

국내외 채권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 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의 60% 이상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하는 펀드로서 2017년 8월 7일에 설정된 무배당 교보GI변액종신보험의 글로벌금리연동채권형 펀드입니다. 위의 채권을 투자함에 있어 बैंक론 및 금리연동 채권 등에 주로 투자합니다.

(21) 글로벌채권형

전 세계 채권 및 이와 관련된 파생상품, 전 세계 채권에 투자하는 수익증권 등에 순자산의 60% 이상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하는 펀드로서 2014년 11월 3일에 설정된 미리 보는 내 연금 무배당 교보변액연금보험의 글로벌채권형 펀드입니다.

(22) 채권형

국내외 채권(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 주식관련사채, 자산유동화증권, 채권관련파생상품 포함) 등에 순자산의 90% 내외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하는 펀드로서 2006년 1월 5일에 설정된 무배당 교보변액연금보험II의 채권형 펀드입니다.

(23) 단기채권형

자금을 단기간 예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단기 채권 등에 60% 내외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자산 등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로서 2006년 1월 5일에 설정된 무배당 교보변액연금보험II의 단기채권형 펀드입니다.

(24) 장기국공채형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장기 국공채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의 90%내외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하는 펀드로서 2020년 7월 20일에 설정된 무배당 교보플러스하이브리드변액종신보험의 장기국공채형 펀드입니다.

(25) 글로벌리츠혼합형

국내외 주식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기구(ETF 포함)나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의 40% 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국내외 채권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기구(ETF 포함),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하는 펀드로서 2024년 1월 2일에 설정된 교보변액연금보험(무배당)의 글로벌리츠혼합형 펀드입니다. 위의 주식을 투자함에 있어 글로벌 상장 리츠(REITs) 및 부동산 관련 상장 주식에 주로 투자합니다.

(26) 글로벌멀티인컴형

국내외 높은 인컴(배당 및 이자수익)을 추구하는 다양한 자산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기구(ETF 포함)나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의 60%이상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하는 펀드로서 2024년 1월 2일에 설정된 교보변액연금보험(무배당)의 글로벌멀티인컴형 펀드입니다. 위의 자산을 투자함에 있어 고배당주, 우선주, 리츠(REITs), 하이일드채권 등의 인컴자산에 주로 투자합니다.

※ 위의 투자대상은 보험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서 운용되고 그 관계법령이 제·개정될 경우 대체 또는 변동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용성과를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운용기관에 펀드운용을 위탁하거나, 수익증권 또는 증권투자회사(뮤추얼펀드)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 운용자산인 유가증권 등의 가격변동 및 해지 등의 사유로 불

가피하게 위의 규정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를 적합하도록 합니다.

제16조 (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

- ① 계약을 체결할 때 제15조(펀드의 유형)에서 정한 펀드 중 글로벌금리연동채권형, 글로벌채권형, 채권형, 단기채권형, 자동국공채형(이하 “채권형 그룹”이라 합니다)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여 선택하여야 하며, 복수로 선택한 경우 기본보험료의 펀드별 편입비율을 설정하여야 하고, 펀드별 편입비율을 5% 단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형 그룹 이외의 펀드를 선택한 경우에는 채권형 그룹의 편입비율 합계를 70%(이하 “채권형 그룹 최소편입비율”이라 합니다)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7항에 따라 채권형 그룹 최소편입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채권형 그룹 최소편입비율을 적용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글로벌자산배분형30, 글로벌자산배분형50 또는 글로벌리츠혼합형을 포함하여 1개 이상의 펀드를 선택하는 경우 채권형 그룹 최소편입비율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채권형 그룹 최소편입비율

$$\begin{aligned} &= 70\% - \text{글로벌자산배분형30 편입비율} \times 70\% \\ &\quad - \text{글로벌자산배분형50 편입비율} \times 50\% \\ &\quad - \text{글로벌리츠혼합형 편입비율} \times 60\% \end{aligned}$$

(다만, 채권형 그룹 최소편입비율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합니다.)

- ③ 이 특약에 새로운 펀드를 추가로 설정할 경우 기존의 계약자에게도 동일하게 펀드 선택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 ④ 계약자는 매년 12회 이내의 범위에서 회사에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계약자적립액이 운용되는 펀드별 편입비율 변경(이하 “계약자적립액의 이전”이라 합니다)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⑤ 제4항에 따라 계약자적립액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채권형 그룹에 해당하는 계약자적립액 비율은 채권형 그룹 최소편입비율을 충족해야 합니다.
- ⑥ 「특별계정투입보험료에 해당하는 이체금액」은 제1항에서 제5항에 설정한 기본보험료의 펀드별 편입비율에 따라 분산 투입됩니다.
- ⑦ 회사는 제4항에 따른 계약자적립액의 이전을 요구 받은 경우에는 제20조(특별계정의 폐지) 제1항 제1호에서 제4호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자적립액의 변경은 「변경요구일 + 제3영업일」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에 따릅니다.
- ⑧ 회사는 제4항에 따른 계약자적립액의 이전 요구를 접수한 때에는 계약자에게 변경대상 계약자적립액의 0.1%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구금액이 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변경 전 펀드의 수익으로 처리하고, 수수료는 제7항의 현금을 이전할 때 공제합니다. 다만, 연 4회까지는 펀드 변경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 ⑨ 회사는 천재·지변, 유가증권시장의 폐쇄·휴장, 유가증권 등의 매각지연,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7항에서 정하는 날까지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 및 향후 이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보험재산이 처분되는 날부터 제3영업일을 기준으로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을 따릅니다.

제17조 (자산의 평가방법 및 운용)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 및 운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르며,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는 펀드 별로 적용합니다.

제18조 (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

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합니다.

1. 좌수

특별계정을 설정할 때 1원을 1좌로 하며, 그 이후에는 매일 좌당 기준가격에 따라 좌단위로 특별계정에 이체 또는 인출합니다.

2. 좌당 기준가격

특별계정의 좌당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 미만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 미만 둘째 자리까지 계산하고, 최초 판매개시일의 기준가격은 1,000좌당 1,000원으로 합니다.

$$\text{좌당 기준가격} = \frac{\text{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text{특별계정 총 좌수}}$$

다만, 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라 함은 당일 특별계정의 총자산에서 특별계정 운용보수를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제19조 (특별계정 제비용 및 보수에 관한 사항)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8조(신탁계약의 체결 등)에 따른 보수, 그 밖의 수수료와 동법 시행령 제265조(회계감사인의 선임 등)에 따른 회계감사비용, 채권평가비용 및 유가증권매매수수료 등을 특별계정자산에서 인출하여 부담합니다. 다만,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제공하는데 드는 비용은 회사가 부

담합니다.

제20조 (특별계정의 폐지)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계정을 폐지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각 특별계정의 자산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자산가치의 변화로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해진 경우
 2. 설정일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특별계정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특별계정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3. 해당 각 특별계정의 자산운용대상이 소멸할 경우
 4. 기타 제1호에서 제3호에 준하는 경우

[원본액]

운용성과와 무관하게 특별계정에 실제 투입된 금액을 말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사유로 각 특별계정을 폐지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폐지사유, 폐지일까지의 계약자적립액과 함께 제16조(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에 따른 펀드 변경 선택에 관한 안내문 등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펀드 변경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가 유사한 펀드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유로 계약자가 펀드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연간 펀드 변경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제21조 (특별계정 계약자 공지사항)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계약자에게 공지합니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수시 공시의 방법 등) 제2항에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3. 회사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4.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 ② 회사는 변액보험 판매 후 매 3개월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8조(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계약자에게 제공합니다.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제22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解止)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특약의 해지를 신청한 경우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회사는 제23조(해약환급금)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3조 (해약환급금)

- ① 이 약관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특약이 해지된 날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2조(계약자의 임의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해지신청일 + 제2

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하며,
「해지신청일 + 제2영업일」에 지급합니다.

- ③ 해약환급금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되므로 최저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④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 2)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 ⑤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24조 (계약자적립액의 인출)

- ①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1개월이 지난 후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보험연도 기준 연 12회에 한하여 계약자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

[보험연도]

해당년도 보험계약 해당일부터 차년도 보험계약 해당일 전일까지 매1년 단위의 연도

예를 들어, 보험계약일이 2014년 8월 15일인 경우 보험연도는 8월 15일부터 차년도 8월 14일까지 1년

-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자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하는 경우 1회당 인출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은 인출할 당시 해약환급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인출금액은 「인출 신청일 + 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특약의 총 인출금액은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계약자적립액을 인출할 때 회사는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적은 금액을 수수료로 부과합니다. 다만, 연 4회까지는 인출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다만,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매년 계약해당일의 전일(前日) 이전 5영업일 동안에는 계약자적립액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자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하기 위해서는 인출 후 계약자적립액 잔액이 기본보험료의 10%이상이어야 합니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자적립액을 인출한 경우 최저사망보험금 및 연금지급개시나이의 계약해당일에 적용하는 연금지급기준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인출 이후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 \text{인출 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times \frac{\text{인출 전 계약자적립액} - \text{인출금액}}{\text{인출 전 계약자적립액}}$$

(주) 「인출 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해당 인출 전에 인출이 발생한 경우 위의 방법에 따라 계산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계약자적립액의 인출 예시]

예1) 해약환급금 1,000만원, 납입한 기본보험료 총액이 400만원일 경우

→ ① 10년 이내 인출할 경우

1,000만원의 50%는 500만원이나, 납입한 보험료 총액 한도에 따라 400만원까지 인출 가능

② 10년이 지난 후 인출할 경우

1,000만원의 50%인 500만원 인출 가능

예2) 해약환급금 500만원, 납입한 기본보험료 총액이

3,000만원일 경우
→ 500만원의 50%는 250만원이나, 계약자적립액이 기본
보험료의 10%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200만원까지 인
출 가능

- ⑤ 계약자적립액을 인출할 때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이 적립되는
이자만큼 해약환급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이후 해약환급
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제25조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 배당금이 없습니다.

제7관 분쟁조정 등

제26조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약환급금 청구권 및 계약자
적립액 청구권은 해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보험금 지급사유가 2022년
4월 1일에 발생하였음에도 2025년 4월 1일까지 보험금을 청
구하지 않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제27조 (준거법)

- ① 이 특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자산운용 관련 용어 및 사항은 관련 법규 및 신탁약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만, 자산운용 관련 용어 및 사항은 관련법규 및 신탁약관 등이 제정 또는 개정될 경우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제28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저사망보험금 및 실적배당 종신연금 보장은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29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전환 전 계약의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별표 1)

연금지급 기준표

1. 보험기간

연금지급개시나이(A)	55세 ~ 80세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계약일부터 (A)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종료 후부터 종신까지

2. 연금 지급내용

[실적배당 종신연금]

가. 기본형

구분	지 급 사 유	지 급 내 용
기본형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	연금지급기준금액을 기준으로 실적배당 종신연금지급률(기본형)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금액을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 지급

나. 10년 집중지급형

구분	지 급 사 유	지 급 내 용
10년 집중지급형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	- 연금지급개시시점부터 집중지급기간(10년)까지 : 연금지급기준금액에 실적배당 종신연금지급률(10년 집중지급형)의 2배를 곱하여 계산한 연금액을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 지급

구분	지 급 사 유	지 급 내 용
		- 집중지급기간(10년)이 지난 후 : 연금지급기준금액에 실적배당 종신 연금지급률(10년 집중지급형)을 곱 하여 계산한 연금액을 피보험자가 매 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 지 급

- (주)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계약은 소멸되며, 이 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과 최저사망보험금 중 큰 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2. 「계약자적립액」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개별 계약자별로 배분된 금액 등을 말하며, 특별계정의 평가 등에 따라 매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3. 실적배당 종신연금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산출합니다.
- (1) 기본형 : 연금지급기준금액 x 실적배당 종신연금지급률
- (2) 10년 집중지급형
- (가) 연금지급개시시점부터 집중지급기간(10년)까지 :
- 연금지급기준금액 x 실적배당 종신연금지급률 X 2
- (나) 집중지급기간(10년)이 지난 후 :
- 연금지급기준금액 x 실적배당 종신연금지급률
4. 「연금지급기준금액」이라 함은 연금지급개시나이의 계약해당일에 계약자적립액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큰 금액을 말하며, 이후 연금지급기준금액 재설정일마다 계약자적립액과 직전 연금지급기준금액(다만, 직전 연금지급기준금액 재설정일 이후 계약자적립액을 인출한 경우에는 변경된 연금지급기준금액) 중 큰 금액을 연금지급기준금액으로 재설정합니다. 다만,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계약자적립액을 인출할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 인출 이후의 연금지급기준금액
- $$= \text{인출 전 연금지급기준금액} \times \frac{\text{인출 전 계약자적립액} - \text{인출금액}}{\text{인출 전 계약자적립액}}$$
- 다만, 인출 전 연금지급기준금액은 해당 인출 전에 인출이 발생한 경우 위의 방법에 따라 계산된 연금지급기준금액을 말합니다.
5. “연금지급기준금액 재설정일”이라 함은 연금지급개시나이의 계약해당일부터 매 3년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6. 「실적배당 종신연금지급률」

(1) 기본형

연금지급개시나이	피보험자가 남자인 경우	피보험자가 여자인 경우
55 ~ 59세	3.80%	3.60%
60 ~ 64세	4.05%	3.80%
65 ~ 69세	4.50%	4.25%
70 ~ 74세	4.70%	4.50%
75 ~ 79세	4.95%	4.95%
80세	5.40%	5.40%

(2) 10년 집중지급형

연금지급개시나이	피보험자가 남자인 경우	피보험자가 여자인 경우
55 ~ 59세	2.70%	2.65%
60 ~ 64세	2.80%	2.75%
65 ~ 69세	3.00%	2.95%
70 ~ 74세	3.05%	3.00%
75 ~ 79세	3.10%	3.10%
80세	3.20%	3.20%

7. 연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눈 연금액을 지급일까지 「평균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연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보험연도의 미지급된 잔여 연금액에 대하여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생존연금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8.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제2조(용어의 정의) 제3호 '다'목 에서 정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별표 2)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6조 제2항 및 제23조 제4항 관련)

1. 사망시 지급액 (제4조 제1항)

기 간	지 급 이 자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0%)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2. 실적배당 종신연금 [제3조, (별표 1) 연금지급 기준표]

구 분	기 간	지 급 이 자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보험기간 만기일 이내	공시이율
	보험기간 만기 이후	1년이내 : 공시이율의 50% 1년초과 기간 : 공시이율의 40%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3. 해약환급금 (제23조)

구 분	적 립 기 간	지 급 이 자
해약환급금 (제23조 제1항)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이내 : 공시이율의 50% 1년초과 기간 : 공시이율의 40%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해약환급금 (제23조 제2항)	「청구일 + 제2영업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실적배당 종신연금은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공시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2. 지급이자의 계산은 일복리 일자 계산하며, 제26조(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위의 공시이율은 계약체결시의 금리연동형 연금보험의 공시이율을 말하며, 공시이율이 해당기간 중 변경될 때에는 변경된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4.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 이자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5.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6. 회사가 해지권을 행사하는 경우 위 표의 '청구일'은 회사의 해지 의사표시(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포함)가 보험계약자 또는 그의 대리인에게 도달한 날로 봅니다.